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1/12/15 통권 1549호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공인이다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 하는 'K-ESG 가이드라인' 발표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코로나시대 장기화와 청년창업자의 신규사업 간략 점검표 10가지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한번에 해결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 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K-ESG 가이드 라인' 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법인의 사업부 분할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괄 승계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님 (p.14)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직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회계사·감사인이 뽑은 회계위험 있는 유의할 핵심감사사항(KAM)의 빈발항목>

1. 수익인식(36.8%) : 모든 상장기업은 수익과다, 일찍 이익인식유혹, 건설·조선업의 기성 고수익 과잉반영, 매출과다계상
2. 손상차손(24.9%) : 각종 자산의 손실요인과 손상차손 반영 안하거나 늦추기, 다음기 반영
3. 재고자산(10.9%) : 재고자산의 취득가격의 과다·과소평가, 재고수량 감소 미반영 등, 재고수불 불합리
4. 공정가치평가(8.3%) : 금융자산, 부채의 공정가치평가 미실행, 과다평가, 또는 취득원가로 반영 주장
5. 대손충당금(4.8%)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가능성 과소평가, 대손상각손실 미반영
6. 특수관계자(2.9%) : 회사와 특수관계자(주주, 경영진, 자회사, 관계회사, 직원 등) 거래, 대차 상계·누락, 미공지
7. 연결지분법(2.2%) : 연결제무제표 작성요건 미흡(내부거래 상계, 내부이익 제거안함 등), 지분법과대평가
8. 법인세(1.9%) : 순이익×세율 = 법인세±세액공제감면 부정확, 이연법인세차·대항목 부정확
9. 사업결합(1.2%) : 기업간 인수합병시 영업권·합병차손익의 기재누락과 미비, 과잉반영
10. 충당부채(0.8%) : 퇴직급여비용, 하자보수, 제품하자보증비용 등 비용·손실 충당금 과소반영, 부외부채 반영안함
11. 개발비(0.6%) : 연구개발비 자산의 과다반영,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대응성 부족,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부족
12. 리스(0.3%) : 운영리스도 모두 금융리스로 하여 리스자산과 대응부채의 반영, 기간이자율의 부적절 적용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49호 / 주간 50호

2021. 12. 15.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회계사·감사인이 뽑은 회계위험있는 유의할 핵심감사사항(KAM)의 빈발 항목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코로나시대 장기화와 청년창업자의 신규사업 간략 점검표 10가지	2
C E O 에 세 이	CEO는 공인이다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법인 총부세 문의 - 재화를 공급한 이후 시장상황 변동으로 사후 공급단가 조정시 매출에 누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약정을 사후에 작성한다면 매출에 누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매출채권 회수 관련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한번에 해결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상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시뮬레이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10 11
직 장 인 Survival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습관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사전법령부가-186, 2021.03.02) -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법안-564, 2021.05.18)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내년 하반기 월급 외 2000만원 버는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추가 부담	15
마 케 팅 Tax consulting	법인의 사업부 분할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괄승계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님	14
세 무 정 보	-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16
경 영 정 보	-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7
회 계 정 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43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 코로나시대 장기화와 청년창업자의 신규사업 간략 점검표 10가지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점검항목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 내용
1. 업종선택	아는 업종선택, 사업타당성 분석, 비대면, 비접촉 배달전문 특화 품목(온라인쇼핑, 정보, IT, 통신, 영상, 음악), 미래성장분야, 플랫폼형대, 유행민감분야 회피, 경박단소로 시작
2. 장소선정	상권 분석, 사업장 임차 · 취득(취득세 4%, 과밀억제권 3배 초과 등), 시간, 공간축소, 비방문 이면도로, 외곽가능, 집 등 이용 무점포전략 매장의 고정임대료는 절대삼가, 변동사용료, 임차료 감액조건 등
3. 명칭 작성	업종과 연관있는 명칭, 사업철학 반영, 단순명료함, 주변 지역의 상호 검색 · 중복 회피, 온라인화, 부르고 기억하기 쉬운 4음절 이하
4. 생산설비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제조 · 가공 · 조립 · 보관 등 물적시설 최소 투자, 과잉설비투자는 금물, 또는 임대차나 리스 등 자금조달 복수 투자자 모집시 경영권 안정확보방법 연구(최소 50% + 1주), 차입경영 자제
5. 설립등기	개인사업자는 등기 불필요, 동업여부와 지분율 결정, 주민등록등본만 필요, 법인이면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함(주주명부 필요, 최소자본금 요건은 없음)

6.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등록[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자가등기부 등)] + 동업계약서, 자가등록가능,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 제출
7. 매출고객	시장조사 · 가능소비자 조사, 경쟁회사 조사, 손익분기점 분석, 온라인 SNS 마케팅(유튜브,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쇼핑몰 시스템 활용, 목표고객 결정, 고객취향 파악, 최종 고객 직접거래방향
8. 원료매입	핵심기술만 본인 수행, 주변인맥 활용, 나머지는 모두 외주조달 · 구입(납품처 다변화), 고정생산설비 축소 다수기업과 원 · 부재료 공급망 공유, 공동구매, 위험분산, 원가분석, 원가 계산 가능해야 함
9. 직원 채용	창업자 본인 1인다역으로 시작, 배우자 동의와 협업, 안정계도 진입 후 보조인재 채용, 장기근속 유도
10. 회계경리	매출 · 매입 · 자금관리 직접 수행, 회계처리 · 세금신고도 직접 가능하지만, 시간 절약과 완벽품질을 위해 외부 회계세무대리인에 위탁함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3일 (금)	12월 6일 (월)	12월 7일 (화)	12월 8일 (수)	12월 9일 (목)
미 달 러 (USD)	1177.30	1178.60	1183.70	1181.20	1176.40
일 본 엔 (JPY)	1039.97	1042.69	1043.23	1040.48	1034.43
캐 나 다 달 러 (CAD)	918.94	918.66	927.96	934.09	929.59
홍 콩 달 러 (HKD)	151.09	151.19	151.75	151.49	150.86
위 안 화 (CNH)	184.83	184.95	185.73	185.41	184.93
유 로 화 (EUR)	1330.41	1332.29	1335.63	1331.15	1334.33
호 주 달 러 (AUD)	834.76	826.20	834.21	840.72	843.01
싱 가 폴 달 러 (SGD)	859.85	859.23	864.74	864.78	863.7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32	278.56	279.70	279.11	278.47

# CEO는 공인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CEO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미 공인(公人)이다.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경영이란 경제적 성과달성을 위한 관리적 기능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인 사회적 기능이다. 이른바 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이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핵심인사인 CEO는 공인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CEO는 그 기업만의 지도자가 아니다.

말에는 시대적 철학이 담겨 있다. 장돌뱅이, 장사치, 장사꾼, 상인, 기업가, 사장, 최고경영자 CEO. 돌이켜보면 CEO란 단어 뒤에는 이런 무수한 역사적 흔적이 담겨있다.

그런데 요즘 말을 사용하는데 오염현상이 많은 것 같다. 생각을 전하는 귀중한 언어로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간직하려 들지 않는다. ‘사랑’이란 말도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말인가! 영화 속에서처럼 ‘사랑’타령도 너무하다보니 싸구려가 됐다.

새파란 연예인들 사이에 적하면 ‘공인’ 운운해대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인으로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걸 보면 웬지 쑥스럽다. 10대들의 우상인 나이 어린 가수들이 ‘공인’ 운운하는 것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지명도가 높아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또 영향을 주더라도 연예인은 인기인이지 공인이 아니다. 연예인을 가볍게 보아서 그러는게 아니다. 연예인이 공인과 같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생활과 연예활동을 건전하게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시비하는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인기인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스타 일뿐이다.

심지어 20세기 최대의 예술가인 피카소도 거장(巨匠)이라고 하지 공인이라 하지 않는다. 귀족작위까지 받은 로렌스 올리비에도 위대한 연극인이지만 공인이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잭 웰치와 마이클 잭슨은 다르다. 존 F 케네디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다르다.

못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서정을 주는 인기인과 마땅히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공인과는 다르다. 인기인이 공인인양 하는 것도 무리고 공인이 인기인이 되려 해서도 안된다.

“군자는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뇌동만 하고 화합하지 못한다.”고 일찌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공인은 인기에 영합하는 표플리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연예인화를 경계하는 말이다. 또 주가만 관리해서 얻는 작금의 CEO행태도 천박한 심보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CEO란 공인은 묵묵히 주어진 일을 다하여 실적과 실천으로 기업과 사회에 헌신(獻身)하여야 한다.

인기와 다른 유혹을 이기면서 묵묵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심(獻心)이 있어야 한다.

바로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건전한 기업경영을 통해 주주와 투자가 그리고 채권자를 섬기는 마음이 우선이다. 또 고객을 섬기고 종업원과 협력회사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바를 찾아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의 경우 동남아 등에 투자한 후 현지 근로자들을 학대하거나 현지 사회와 국가에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한국 대표적 기업은 한때 ‘사카린 밀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CEO라는 공인의 자격을 자식에게 무리하면서 세습하는 것도 년센스다. 자선행위라 하더라도 자만심, 과시, 명성, 허영 또는 위장된 야망으로 ‘기부’하는 행위도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아니다. 모름지기 현대 사회의 공인 CEO는 경제적 성과인 가치, 즉 부(富)를 창출하여 관계자들의 번영을 꾀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사회 속에 존재하므로 건전하게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럴때 그 기업도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의 공인 정신을 기리고 싶다.

**법인 증부세 문의**

**Q** 지방제조법인이고, 장부가기준으로 공장 토지/건물이 150억, 기숙사 금액이 2억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증부세 납부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증부세 합산배제 안내문이 왔는데 저희는 증부세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은 합산에서 배제되는데 귀사도 기숙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사가 증부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합산배제신청과 관련하여 서도 관할 세무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화를 공급한 이후 시장상황 변동으로 사후 공급단가 조정시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약정을 사후에 작성한다면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Q** <사실관계>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제품(상품)을 공급한 후 일정기일이 지난 뒤 도매상이 소매상에 제품(상품)을 판매할 때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공급단가를 조정해 주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공급시기 이후에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공급단가를 조정할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2. 가격 하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불확실 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공급단가 조정시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매출에누리로 인정 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최초 공급시기에 사전약정 필요한지요?  
 또한 약정서 또는 계약서 문구에 구체적으로 조건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른 매출 에누리를 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되는지요?
3. 이러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일부거래처만 특약이 가

능한지요?

4. (회계) 매출에누리 발생이 일부거래처에 비경상적으로 가끔 발생하는데 변동대가 총당 부채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A

1.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는 공급시점에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 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단가 조정은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공급단가 조정을 특정업체에게만 해주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매출에누리는 최초 거래시부터 매출액에서 감액되어 기록되므로 총당부채 설정하지 않습니다.

## 매출채권 회수 관련

Q

매출채권 회수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 → 당사의 중국현지법인 → 중국 고객사' 이런 흐름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으나, 당사 담당자의 착오로 '당사 → 중국 고객사' 이렇게 제품을 보내고 매출채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고객사는 '중국현지법인이 공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로 대금을 송금해 줄 수 없다' 라고 하여, 중국현지법인에서 중국 고객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당사로 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현지법인에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금액 회수시 입금처는 당사의 현지법인이고 매출채권 상계는 중국 고객사로 처리를 해도 무방할런지 여부입니다.

A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중국현지법인을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서류 등을 보관하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한번에 해결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상담실 백종훈 차장

2021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서류나 증빙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근로소득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연령 제한 없음)의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미취학 아동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초·중·고등학생 : 학교 외국인학교·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에 대해 교육비공제가 적용되며,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③ 대학생 :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도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 교육비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노인대학 수강료 등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초·중·고 대학생의 학원비, 학습지 대

금,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입사 전 및 퇴직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공제대상교육비에 지출한 금액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국외교육비 공제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하는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특히,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게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한다.

## 교육비공제를 위한 주의사항

- ① 인가된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영수증의 경우는 직접 수취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교육비)’을 영수증으로 사용하면 된다.
- ② 보육료납부영수증,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영수증,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영수증 등은 직접 챙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③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대상이 되나,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당해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상향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시뮬레이션

구분	기존(9억원)	변경(12억원)
양도차익	3억2000만원	1억6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3억1750만원	1억5750만원
산출세액	1억160만원	4045만원
지방세	1016만원	404만5000원
총 납부세액	1억176만원	4449만5000원

※ 2년 보유, 2년거주 전체, 필요경비 0원 계산

### 화

#### 가상자산과 주식 과세정책 비교

	가상자산	주식
일정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과세공제액	연 250만원	연 5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연 250만원)
분류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능	가능
세율	20%	투자수익 연 3억원 이하 20% (초과 25%)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보유기간	과세표준	양도세율	누진공제	계산법
1년 미만	-	70%	-	양도차익 × 70%
1-2년 미만	-	60%	-	양도차익 × 60%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	과세표준 금액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과세표준 금액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과세표준 금액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과세표준 금액 × 35% -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과세표준 금액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과세표준 금액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과세표준 금액 ×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5,040만원	과세표준 금액 × 45% - 5,04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 생략



##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

연소득	세액 공제율	공제한도		
		연금저축	IRP	합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	연 400만원 (만 50세 이상은 600만원)	연 700만원 (만 50세 이상은 900만원)	연 700만원 (만 50세 이상은 900만원)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13.2%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연 300만원	연 700만원



##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습관

1. 행복한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  
'최대'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2. 후회는 슬픔만을 낳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때론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만족하고 결과에 후회하지 않는다.
3. 거절을 재평가한다  
행복한 사람은 거절을 당해도 거기에서 다음의 재도전을 위한 자신감을 얻는다.
4. 비교는 금물이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받지 않는다.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5.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신중할 수는 있으나 우울하고 예민하기 쉽다.  
깊은 자아성찰은 삶의 혼란과 고통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6. 기쁨은 더 크게, 슬픔은 더 작게  
행복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남들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웃음으로 넘기며 나아질 수 있는 점을 더 많이 생각한다.
7. 긍정의 유지  
행복한 사람은 사람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서도 긍정적인 결과와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모두에게 행복을 오래 지속시켜줄 수 있다.

# 최신 판례 예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사전법령부가-186, 2021.03.02

## 질 의

-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소득금액 계산 시 연결자법인(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연한 경우로서 이후 C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써 B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233, 2021.03.09

## 질 의

- 신청인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고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함

질의내용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 신고방식을 선택한 경우.

- 주택임대업에 공하는 건축물에 대해 소득령 § 68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 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소득령 § 68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64, 2021.05.18

## 질 의

- (질의1) 적격분할 요건 위반사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분할 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적격분할 요건 위반사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분할매수차손익

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 분할신주가액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의 기산시점이 언제인지

### 회신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분할당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이하 '추인')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법인의 사업부 분할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괄승계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님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 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사전법령법인-516, 2021.05.25

### 질의

-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증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내년 하반기 월급 외 2000만원 버는 '고소득 직장인'도 건보료 추가 부담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며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에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올해 6월 현재의 경우 월급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총 23만528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1.23%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산정하고 있다.

### 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112만 가구에 4952억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2만 가구에 4952억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30일이었던 지급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전체 신청가구는 121만 가구, 신청금액은 5300억원이나, 심사 결과 최종 지급가구는 112만 가구로 결정됐다.

지급금액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이 완료되면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 회계기준위, K-IFRS 재무제표 표시회계정책 법인세 등 개정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 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

회계기준위는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국세청, 2021. 12

- 12월, 5만 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11월 30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2. 31.(금)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육실종사원
  -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2. 6.(월)부터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제출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월 제출 첫 달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작성사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를 풍부하게 담았으니 제출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 한편,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2.1.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①소득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 ②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10만 원
- '22년 1월부터는 소득자 본인도 홈택스에서 본인소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2월부터 캐디 등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 '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 확인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구체적인 수정절차, 수정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 사업자들께서는 소득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 전에는 다양한 도움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개별안내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오니,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12월, 대리기사, 킷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①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가 아닌 대리운전업체 등이 제출합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월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대리기사, 킷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이하 '사업장 제공자 등')는



-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21년 12월 31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12월 6일(월)부터 사업자 약 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인은 3만 명, 개인은 2만 명입니다.
- 한편, '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자료 제출 예시

소득발생시기	제출기한	비고
'21. 1. 1. ~'21. 11. 10.	'22년 2월 말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21. 11. 11. ~'21. 11. 30.	'21년 12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1. 12. 1. ~'21. 12. 31.	'22년 1월 말일까지	
'22. 1. 1. ~'22. 1. 31.	'22년 2월 말일까지	
'22. 2. 1. ~'22. 2. 28.	이후 매월 제출	

2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대상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8개 업종의 인적용역 소득자료입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매월 제출
    -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1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Ⅰ 거래형태별 제출 소득자료 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대가를 개인이 지급)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대가를 사업자가 지급)
<p>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p>	<p>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p>
<p>-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퀵서비스업체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p>	<p>-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퀵서비스업체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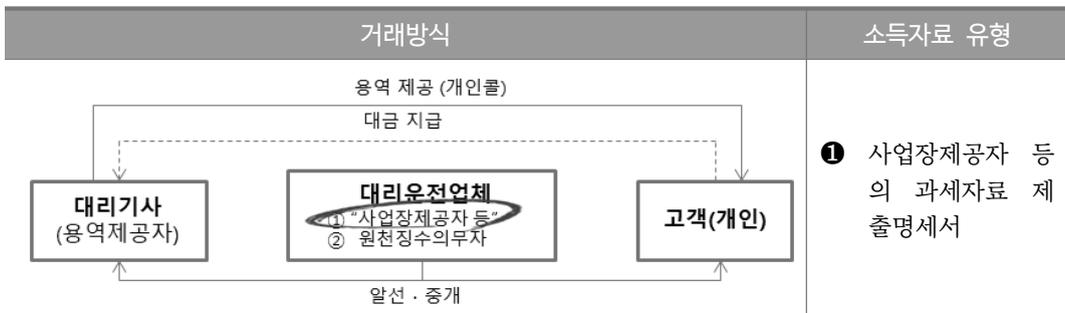
## 2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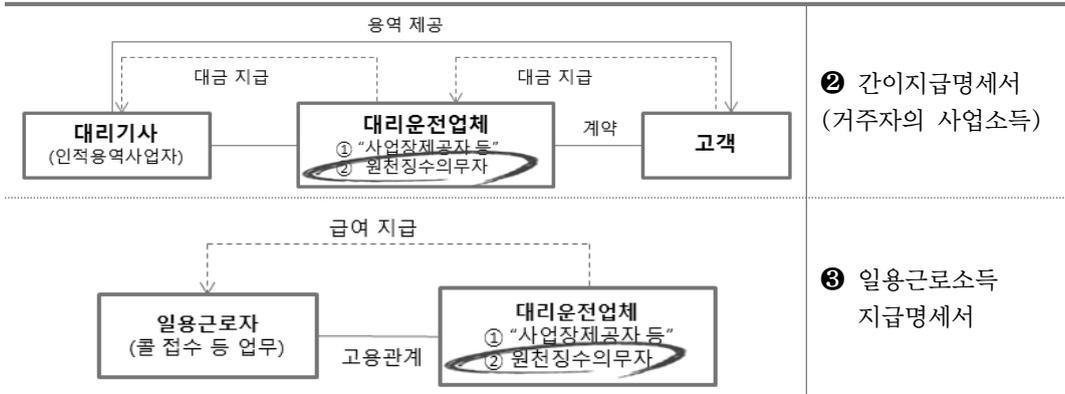
### ①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동일한 사업자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제출하는 소득자료의 종류는 다르며, 3가지 유형\*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이에 따라 납세자가 여러장의 안내문을 받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 (예시) 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와 고객(개인)을 알선·중개하고, 대리기사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 ②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계약을 통해 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후 대리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 ③ 대리운전업체가 콜 접수 등을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오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예시) 11월 11일 ~ 11월 30일 소득발생분 → 12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자신고 가능

유형		접근경로
전자	PC	홈택스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신고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하오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다만, 전자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제출도움창구」 또는 각 「소득·부가세과 상담창구」에서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신고 지원을 받으시거나,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서식명)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3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할 사항

#### 1 성실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①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②제출기한 내 ③전자제출하는 경우 제출의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 1 세액공제 사례① 1

◆ 개인사업자인 A대리운전업체가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21년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각각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A대리운전업체는 21년 귀속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33만 원 세액공제

##### ②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202111	202112	500명
202112	202201	600명

##### 나. 공제세액 계산

▶ 세액공제 대상 용역제공자 인원 수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⑧×⑨와 ⑩ 중 적은 값)
1,100명		300원	200만원	330,000원

#### 1 세액공제 사례② 1

◆ (주)B대리운전업체가 '22년도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6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주)B대리운전업체는 22년 귀속 법인세에서 198만 원 세액공제

##### ②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202201	202202	600명
202202	202203	600명
202203	202204	600명
202204	202205	600명
202205	202206	600명
202206	202207	600명
202207	202208	500명
202208	202209	500명
202209	202210	500명
202210	202211	500명
202211	202212	500명
202212	202301	500명

##### 나. 공제세액 계산

▶ 2022년 1월~12월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⑧×⑨와 ⑩ 중 적은 값)
6,600명		300원	200만원	1,980,000원

Ⅰ 세액공제 사례③ Ⅰ

◆ (주)C대리운전업체가 '22년도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7,8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주)C대리운전업체는 22년 귀속 법인세에서 200만 원 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

㉑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202201	202202	600명
202202	202203	600명
202203	202204	600명
202204	202205	600명
202205	202206	600명
202206	202207	600명
202207	202208	700명
202208	202209	700명
202209	202210	700명
202210	202211	700명
202211	202212	700명
202212	202301	700명

나. 공제세액 계산 2,340,000원(⑧×⑨)와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⑧×⑨와 ⑩ 중 적은 값)
7,800명	300원	200만원	2,000,000원

Ⅰ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례 Ⅰ

◆ A대리운전업체가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21년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소득자료를 각각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①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는 문서로 제출하고, 12월 소득자료는 전자 제출한 경우

☞ 소득자료를 전자 제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임

㉑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202111	202112	500명
202112	202201	600명

나. 공제세액 계산 전자 제출된 소득자료의 용역제공자 인원 수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⑧×⑨와 ⑩ 중 적은 값)
600명	300원	200만원	180,000원

I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례 I

- ②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와 12월 소득자료 모두 전자 제출하였으나, 12월 용역제공자 중 5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 만 세액공제 대상임

㉓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202111	202112	500명
202112	202201	600명

나. 공제세액 계산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⑧×⑨와 ⑩ 중 적은 값)
1,050명		300원	200만원	315,000원

- ③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와 12월 소득자료 모두 전자 제출하였으나, 12월 용역제공자 중 50명의 용역제공대가는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정상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㉓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202111	202112	500명
202112	202201	600명

나. 공제세액 계산 → 용역제공대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 포함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⑧×⑨와 ⑩ 중 적은 값)
1,100명		300원	200만원	330,000원

- ⇨ 용역제공대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인적사항 등 나머지 기재사항 모두 기재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

②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22.1.1.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연간 최대 240만 원(1월~12월 소득자료 전부 미제출 시)의 과태료 부과: ①소득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 ②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10만 원

-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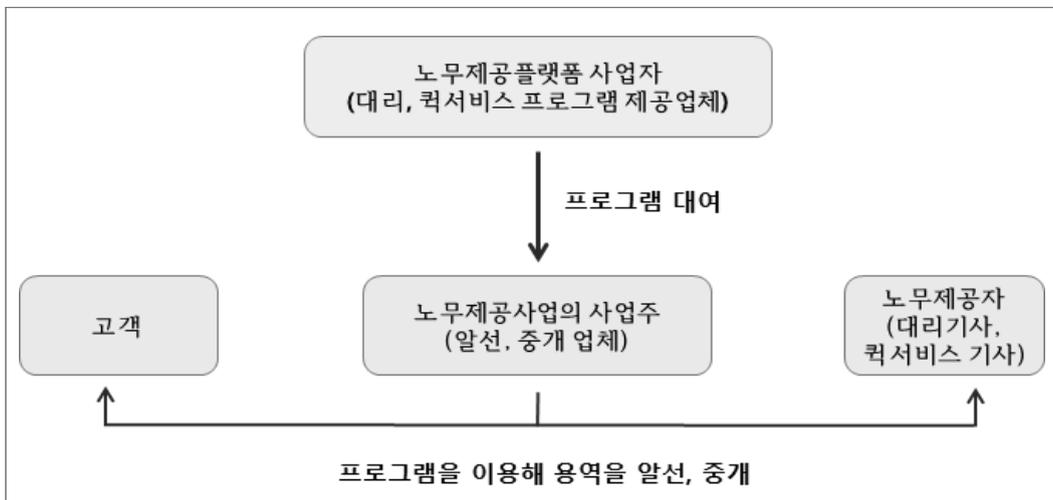
\*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제공기간(개시일, 종료일, 용역제공

일수(횟수)), 용역제공대가

**③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유의하여 제출해주세요.**

-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12월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운전·퀵서비스 알선·중개 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 '22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와 대리·퀵 알선·중개업체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

↓ 거래구조 예시 ↓



소득발생시기	제출의무자	제출기한
'21. 1. 1. ~'21. 11. 10.	알선·중개업체	'22년 2월 말
'21. 11. 11. ~'21. 11. 30.	알선·중개업체	'21년 12월 말
'21. 12. 1. ~'21. 12. 31.	알선·중개업체	'22년 1월 말
'22. 1.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그 다음 달 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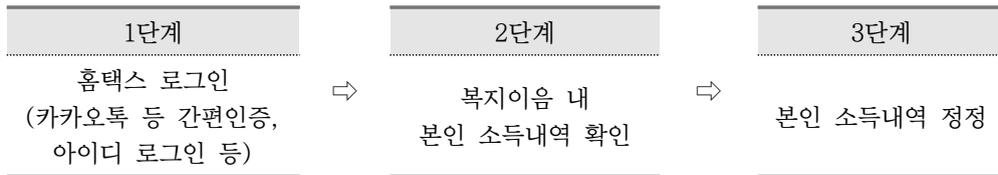
- 다만, 플랫폼사업자도 대리·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11월 11일 이후 발생한 용역제공자(대리·퀵서비스기사)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④ '22년 1월부터 제출된 소득자료를 대리기사 등 소득자 본인이 수정가능합니다.**

- 12월부터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용역제공자 본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22년 1월 중에는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4 소득자료 성실제출 당부

-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 신고 전에는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사업자에게 개별안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사업주께서는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소득자료 제출대상 여부, 소득자료 작성 방법 및 전자제출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소득자료 미제출) A퀵서비스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배달 용역을 제공한 퀵서비스기사 200명(각월 200명)의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모두 미제출함. A퀵서비스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 (소득자료 누락제출) A퀵서비스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배달 용역을 제공한 퀵서비스 기사 200명(각월 200명) 중 100명(각월 10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A퀵서비스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 B대리운전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각월 500명) 중 100명(각월 10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B대리운전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인원 수가 5% 이하) B대리운전업체는 '22년 1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 중 2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B대리운전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소득자료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는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를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됨(사례의 경우: 4%)

-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사례)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22년 1월에 소득금액이 발생한 용역제공자(대리운전원)의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전달받아 소득자료를 제출함. 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A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용역제공자(대리운전원)의 소득자료 제출의무 및 세액공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잘못된 자료를 전달받아 제출한 경우 시정명령에 따라 정확한 소득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K-ESG 가이드라인'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2021. 1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2.1(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함께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또한,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함께 ESG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

- 'ESG 인프라 확충 방안'(21.8월, 관계부처 합동)'의 중점 추진과제인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추진배경>

- 공시 의무 등 ESG 규율 강화, 기업 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급증하는 상황임
- 한편, 국내외 600여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존재하나, 평가기관의 평가기준과 결과도출 방식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 ESG 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도 어떻게 ESG 경영을 준비하고 평가에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

### <방향 / 구성>

-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하고,
  -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EF, GRI 등
-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주요 경제단체, 연기금, 금융·투자기관, 평가기관, 신용평가사·언론사 등 5차례 간담회 및 대한상의 포럼, 경총 ESG 위원회 등 참석

〈K-ESG 가이드라인 구성〉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	•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 (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 (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 (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 또한, 국내 ESG 평가기관에서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 가이드라인이 기존 평가기관뿐 아니라 신생 평가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어 평가시장의 투명하고 성숙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계 획〉

-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별·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22년부터 마련할 계획임

**[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

- 환경 경영(E), 사회적 가치 창출(S),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G) 등 모범적인 ESG 경영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함
  - 올해는 기업의 ESG 관심과 참여 증가에 따라 포상을 확대 수여('20년 19점 → '21년 25점)
- 대통령표창에는 '싱글랜 기술'을 통한 전력량·온실가스 저감, 책임경영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SK텔레콤(주)과 국내 최초 1천억원 규모의 그린론 운영,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성과를 거둔 (주)하나금융지주가 수상
  - 국무총리표창에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 100% 재생에너지 사용(슬로바키아 공장)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KIA(주)와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협력사 기술·금융 지원 등의 공로로 OCI(주)가 수상

〈 포상 대상 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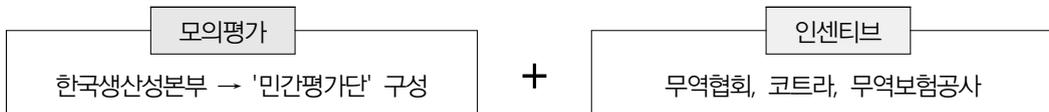
훈격	분야	수상 기업
대통령표창(2)	종합 ESG	•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국무총리표창(2)	종합 ESG	• KIA, OCI

산업부장관표창 (13)	종합 ESG	• KB금융지주, CJ제일제당, 해성디에스, 에어퍼스트, 휴온스글로벌,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E) 부문	• 신한금융그룹, 해양환경공단
	사회(S) 부문	• 일동제약,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배구조(G) 부문	• 중소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기부장관표창 (8)	환경(E) 부문	• 청세, 부림산기, 토탈리빙, 지리산한지
	사회(S) 부문	• 한방유비스, 태림산업, 대성기계공업, 휴먼피아코스텍

### [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협의회 발족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점차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국가별 '공급망 실사제도'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SG 시범사업을 추진함
    - \* (EU)공급망실사제도('21.1월 입법권고안 채택), (독일)공급망실사법('23.1월 시행) 등
    - \* (해외)전자 A社, 식품 N社, 가구 I社 → 납품기업 선정·관리 시 공급망 실사 활용
  - 이를 위해,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로 구성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함
    - \* 무협 이관섭 부회장, 무보 이인호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 참석
  - 5개 기관은 ESG 우수 수출기업 육성 통해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의 뒤를 잇는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음
- 
- '22년부터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희망 수출기업에 대해 평가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에는 수출 관련 마케팅, 전시회, 수출보험 우대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 지원협의회 구성 체계 >



-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ESG 역량 확충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지원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힘
  - ① K-ESG 경영지원플랫폼('21.12월) \* 최신동향·모범사례, 자가진단 툴 등 순차적 제공
  - ②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22년~) \* 중소기업형 가이드라인('22.上, 중기부 협업)
  - ③ 대·중소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22년~) \* E·S·G 각 분야의 대응 전략 등 공유
  - ④ ESG 교육·컨설팅 확대('22년~) \* 온라인 교육 신설, 실무자 교육 강화 등



⑤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22년~) \* 포상확대,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 산업부 박진규 제1차관은 "ESG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진단하며,
  -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도전을 지혜롭게 대응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구상중인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힘

## 붙임 1 - K-ESG 가이드라인 참고 사항

### [ 가이드라인 취지 ]

- K-ESG 가이드라인은 국내 ESG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판,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등 마련을 통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
- K-ESG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핵심 요소에 전문가·기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시
  - 따라서, 특정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세부 기준 등과 동일하지는 않음
- 기업과 평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단항목별 추가설명, 용어정리, 참고자료\* 등 최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
  - \* 참고자료 : 진단항목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를 제시 (비용이 발생하거나 비공개 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출처는 제외)
  - 추후, K-ESG 경영지원플랫폼을 통해 우리 산업의 ESG 항목별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 → 점수로 제시한 점검기준의 활용성을 높일 예정
- 문항별 가중치는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마련 시 제시 방향 검토
  -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경영 방향과 주요 평가 요소를 우선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가중치는 업종별, 규모별 등 특성 차이로 일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자칫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K-ESG 가이드라인은 우리 기업에게 ESG 경영의 주요 핵심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ESG 평가 계획은 없음)

[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회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총 61개 진단항목			

붙임 2 - 수출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 (배경) 납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규율 및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 추세 (환경·온실가스, 분쟁광물 원산지, 인권, 노동 분야 등)
  - \* (EU)공급망실사제도('21.1월 입법권고안 채택), (독일)공급망실사법('23.1월 시행)
  - \* (해외)전자 A社, 식품 N社, 가구 I社 → 납품기업 선정·관리 시 공급망 실사 활용
- (경과) 지원 방향 구상(9월) →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대책 반영\*(10.27) → 실무협의회 개최\*\*(11.18)
  - \* 수출기업 ESG 지원협의회 구성, 희망기업 시범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 \*\*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무협·무보·코트라 실장급, 생산성본부 ESG연구소장·센터장 등
- (방향) ▲수출 중소기업 ESG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에 대한 평가경험 제공, 컨설팅, 금융·마케팅 인센티브 등 체감도 높은 지원 추진
  - 희망기업 대상 ESG 시범평가\*(최대 200개社) → 중소기업 ESG 역량 확보 및 우수기업은 수출 관련 인센티브\*\* 제공('22년 착수)
    - \* K-ESG가이드라인 및 중소기업형 가이드라인('22년) 적용 + 공급망 실사 주요사항
    - \*\* 기존 수출유관기관의 지원 대상을 ESG 우수기업으로 확대(해외전시회·마케팅, 수출 컨설팅, 보증 및 보험 상품 한도 우대, 보증(보험)료 할인 등)
- (체계) 산업부, KPC, 수출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원협의회 구성



기관	예상 지원 인센티브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 중소기업형 가이드라인 연구 / 평가 참여 민간평가단 구성
코트라	• 수출 마케팅 행사, 글로벌 CSR사업 등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서울국제식품전 등 유료 서비스 수수료 할인 등
무역보험공사	• 해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지원 등 판로 개척 지원 • 수출보험 한도 우대, 보험료·보증료 할인 등
무역협회	• 수출 상담회,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등

## K-ESG 가이드라인 개요

### ESG 이해

#### 1 ESG의 개념 및 논의

##### 1. ESG의 개념 및 중요성

-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
  -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 (환경: Environment)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 (사회: 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 (지배구조: Governance)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 (중요성)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 (기업목적 측면) ESG는 미래사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로 기업의 목적에 내재화 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
  - (자본조달 측면) ESG가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 ESG는 필수적 관리 요소
  - (지속가능 측면) 지속가능성의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발전한 ESG 요소들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필수적

##### 2. ESG 논의의 확산과 발전

- (등장 배경) ESG의 개념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됨



- 보고서에서는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의 위기에서 경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ESG 논의 확산) 지속가능성 논의 이후, ESG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연기금 등의 책임 투자 논의 활성화, 정부 단위의 ESG 제도화,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ESG 활성화 논의로 확대
  - (ESG 제도화) 국가 단위의 ESG 법안 마련 추진, ESG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 등의 제도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 UN PRI(Principle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 발표('06)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재무정보공개 권고안(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을 발표('17)
  - (ESG 활성화) 민간 측면에서는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ESG 관점 투자 선언\*을 통해 기업들이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협·단체 차원의 민간 이니셔티브\*\*가 결성되어 ESG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등 ESG 활성화 논의 확대
    - \* 미국의 BRT(Business Roundtable)은 2019년 8월 연례회의에서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
    - \*\* 산업 및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성된 글로벌 민간 이니셔티브는 산업계가 공통으로 요구 받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개별 기업에게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관리를 요구(전자, 자동차, ICT, 화학, 섬유 등 산업에서 ESG 리스크 완화와 성과창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운영 중)
- (ESG 경영 내재화) ESG가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경영시스템 전반에서의 ESG 내재화를 위한 기업들의 대응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자문/컨설팅/평가하는 서비스 시장이 등장
  - 전 세계에 600여개 이상의 서비스 기관이 ESG 평가 및 자문역할 수행(Sustainability, 2018)

## 2 ESG 주요 동향

### 1. ESG 관련 국내외 동향

- ESG 이슈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도적 규제강화와 투자(공적투자, 민간투자)기관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기업들이 대응 노력도 확대되고 있음
  - (제도적 측면) '06년 UN PRI의 지속가능성장 관련 6대 원칙이 발표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율 강화 추세
  - (투자 측면) 글로벌 연기금 기관들의 ESG를 내재화한 책임투자가 보편화되고, 자산운용사 및 신용평가사 등 민간 투자 기관들도 ESG를 기업의 미래가치로 인식하면서 기업 ESG

정보 공개 수요가 급증

- (민간 측면) 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평가가 확대되면서, 평가·컨설팅·자문을 수행하는 평가기관들이 급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산업 단위의 협·단체 수준에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 자발적 대응 노력도 확대되는 추세

〈표 1〉 ESG 관련 주요 국내외 동향

구분		주요 동향
제도적 측면		•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화 등 ESG 관련 규제 강화
투자	연기금	• 글로벌 연기금의 ESG 투자원칙에 따른 책임투자가 보편화
	자산운용사	•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에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를 이행
	신용평가사	•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ESG 평가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민간	평가 기관	• 기업들의 ESG 대응과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민간 차원의 평가기관이 급증하며, 특히 공급망 관련 ESG 평가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이니셔티브	• (공공) UN을 중심으로 ESG 분야 원칙, 목표 등을 제시 • (민간)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산업 특성을 감안한 이니셔티브 조성하여 ESG 적극 대응 * 환경, 책임경영 이니셔티브도 확대 추세

## 2. ESG 규범화 주요 동향

- 2000년대 전후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ESG 공시 등 규제강화 논의가 확대되었음
  - 2006년 UN PRI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6대 원칙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및 규율 강화가 추진되었음
- (EU) 2003년 회계현대화지침(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51/EC)에서 연차보고서 상 비재무적 요소(ESG)의 공시를 권고하며, 이후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2018년 의무화 함
  - \* 2014년 EU 집행위원회 비재무 정보공개 지침(Directive 2014/95/EU) 제정
  - EU 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기업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ESG 요소 중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의무화 규제\*\*가 발표되고 있음
  - \* (영국)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 의무화(Company Act, 2016), (프랑스, 독일)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보유 기업 ESG 정보공개 의무화(Code de commerce L&R, 2017,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law, 2017)
  - \*\* (EU) 산업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21), (독일)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안 도입 발표('21)



- (미국) 미국은 과거부터 기업윤리 및 지배구조 중심의 제정 및 정보공시를 강화\*해왔으며, 최근에는 환경 및 공급망 관리 등의 법령을 추진\*\*하고 있음
  - \* ('78) 정부윤리법 제정, ('99) 부패방지라운드 등 윤리 관련 법률 활성화
  - \*\* 분쟁광물 규제(도드-프랭크법, 2010),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12), 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15)등
- (일본)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기업들에게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환경에 대한 기업 보고 관련 규제\*를 추진하였음
  - \* 온실가스/에너지('04, '06), 유해물질('11), 환경보고('12) 추진
- (중국) 중국은 국영 및 외자기업들의 CSR 수준 평가를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추진 중
  - \* 국영기업 보고서 발간 권고('08), 기업 CSR 보고지침 개발('09)
- (한국)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장기업)\*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18)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20) → 거래소 자율공시('21) → 일정규모 이상(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25) → 전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30)
  - \*\* 탄소중립('20), 인권기본법('21), 공공조달('22) 등 관련 법안 추진 중

### 3. 책임투자 등 기관투자자의 ESG 동향(연기금)

- ESG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ESG 투자원칙이 수립되고 ESG 투자를 내재화하는 추세
  - (책임투자) '18년 2월 기준 글로벌 책임투자 규모는 30.7조 달러로 '16년 대비 34% 증가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
  - (ESG 채권)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금액 액은 총 5,220억 달러 규모로, '19년 발행량 대비 약 60% 증가(Bloomberg NEF, 2021)
- 글로벌 연기금, 자산운용사 중심의 책임투자가 증가하면서, 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속화(19개 국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총 162개 기관(국민연금 등)이 스투어드십 코드에 참여함
  - \* 스투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 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자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책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지침
- 글로벌 연기금들은 각각의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책임투자를 실행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평가에 필요한 ESG 정보공개를 요구
  - 투자 유형별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ESG 통합투자 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급격하게 활용되는 전략은 지속 가능성 테마투자과 포지티브 스크리닝으로 나타남

<표 2> 글로벌 주요시장의 책임투자 유형의 추세

책임투자 유형	2016	2018	2020	증가율('16~'20)	연평균 증가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248	444	352	42%	9%
포지티브/동종업계 우수기업 선정 스크리닝	818	1,842	1,384	69%	14%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276	1,018	1,948	605%	63%
규범기반 스크리닝	6,195	4,679	4,140	-33%	-10%
기업 관여 활동 및 주주행동	8,385	9,835	10,504	25%	6%
네거티브/투자배제 스크리닝	15,064	19,771	15,030	0%	0%
ESG 통합투자	10,353	17,544	25,195	143%	25%

#### 4. 자산운용사 및 신용평가사 관련 ESG 동향

- (자산운용사)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BlackRock, The Vanguard Group (Vanguard), State Street Corporation(SSBT)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와 의결권 행사를 이행
  - (BlackRock) 거버넌스 구조, 중장기 ESG 목표, ESG 연계 KPI 설정, 기후변화 대응체계, 인적자원 관리 이슈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적극적 의사 결정 참여 권고
  - (Vanguard)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산림, 수자원, 보건, 포용적 금융 등 테마투자를 운용하기 위해 기업의 ESG 정보 활용
- (신용평가) 글로벌 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에서는 ESG 평가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추세
  - (S&P) ESG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대외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1차 평가점수를 산정,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상적으로 판단한 추가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도출
  - (Moody's) 2019년 1월, 2 3개 항목으로 구성된 ESG 지표를 활용하여 신용평가에 적용 (Moody's ESG & Climate risk website)
  - (Fitch Ratings) Fitch는 2019년 1월, ESG 통합점수 시스템을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자체 평가결과를 공개(ESG Relevance Scores for Corporates Report, 2019)

#### 5. ESG 평가기관 동향

- 기업의 ESG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기금,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등에 제공
  - 기업의 ESG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기금,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등에 제공

- ESG 평가기관은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수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를 매년 최신화하고 있는 추세
  - 평가기관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굴하여 ESG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방법들을 고도화하고 있음

〈표 3〉 글로벌 ESG 주요 평가 지표 수 및 신뢰성 확보 방안

평가기관	지표수	신뢰성 확보 방안
MSCI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t-Feedback 시스템 오픈(2020)</li> <li>• 기업별 등급/백분위 공시(2020)</li> </ul>
Bloomberg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산출 근거 확인 절차(2016)</li> <li>• 데이터 Quality-Control 강화(2019)</li> </ul>
CDP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검증 시 가점 부여(2013)</li> </ul>
S&P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데이터 대외공시 강화(2018)</li> <li>• 평가항목별 평가점 제공(2020)</li> </ul>

- 공급망 관련 ESG 평가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Apple, BMW, VolksWagen 등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공급망) ESG 관리가 강화,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련 ESG평가도 활성화
  - 국내기업 또한 협력사 대상 ESG 평가 도입 확산 추세
  - 일부 국내 신용평가사는 중소기업 ESG 평가를 위한 모델 개발 추진

## 6. 공공·민간 ESG 이니셔티브 동향

-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ESG 확산 및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 이니셔티브는 정보공개 원칙, 지침, 지표, 방법론 등을 시장에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UNGC) 조직의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기초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이 준수해야 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제시
  - (UN SDGs)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 있도록 17개 분야,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Apple, HP, Dell 등 전자제품 산업의 가치사슬(생산~소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등장하였으며, 최근 이니셔티브 가입 대상을 자동차, 항공, ICT 등의 산업으로 확장
  - (Drive Sustainability) BMW, Volvo, Daimler, Toyota 등 완성차 산업의 조달/생산/유통 단계에 잠재된 환경, 사회 이슈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성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 (Plastic Economy, NaturALL Bottle Alliance)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 산업계 공동의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진행

- (Renewable Energy 100, Science Based Targets)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배출량 관리 방법론을 개발 및 확산하는데 집중
-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조직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Guidance)과 지표(Indicators)를 제시
- 산업별, 이슈별 이니셔티브는 조직의 자율적 참여 방식에서 강제적 규약 방식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으며, ESG 성과를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

### 3 국내 ESG 대응 현황

- (투자)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에 비해 현재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펀드) 국내 ESG 펀드는 자금유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규모 급증
    - \* ESG액티브펀드 약 3배 ↑, 인덱스펀드 약 6배 ↑('17 대비 '20년 기준)(금융위원회 '21.2)
  - (채권) '20년 기준 국내 ESG 채권 상장종목은 약 549개(상장잔액 82.6조원)로 빠르게 성장(금융위원회, '21.2)
  - (연기금 및 금융기관) ESG 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상품 출시 등 ESG를 반영한 투자전략 추진 중
- (기업·단체)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를 대응
  - (기업일반) 주요 대기업 등은 ESG 관련 정책 및 목표를 선언하고, 계열사의 ESG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체계를 수립
  - (중견·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은 경영부담(인력, 비용)으로 인해 전반적인 ESG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ESG 평가 확대로 점차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 (수출기업) 수출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특정 ESG 요건에 집중하여 대응 중이나 글로벌 원청기업의 ESG 준수요구 강화 추세
  - (경제단체 등) ESG 위원회 설립, ESG 관련 교육 및 포럼 개최 등 기업의 ESG 대응 지원
- (ESG 서비스) 민간 컨설팅·신용평가·언론사 등이 ESG 컨설팅 및 평가에 참여하면서 ESG 서비스 생태계 조성 중
  - 국내 컨설팅 기관 및 신용평가, 언론사 등은 각각 ESG 전담 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하여 ESG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 참여



## II K-ESG 가이드라인 개요

### 1 추진 배경

#### 1.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증가

-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
-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는 금융·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ESG 공시에 대한 규범화 확대(EU, 영국 등)

#### 2. 기업의 ESG 경영 추진과 평가대응 애로 증가

-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도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국내·외 600여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기업에서 각각의 평가기준, 평가방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기관마다 고유한 평가 프로세스, 지표, 측정산식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일관된 평가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음

### 2 구성 방향

#### 1.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 제시를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61개 사항 마련
  -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

## 2.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 제시

-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 되고 있거나 국내 제도에 서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업의 ESG 추진 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 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문화 적·법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 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 3.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일반)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활용가이드 제시
  - 또한, 국내의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의 제시를 통해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평가대응 역량 확보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선별 제시(27개 항목)
- (평가·검증기관) ESG 평가 시 K-ESG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하여 기본 진단항목 외 대체·추가 항목 제시

# 3 K-ESG 가이드라인 개발 경과

## 1. K-ESG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세스

(1단계) 글로벌 ESG 지표 정합성 검토

'19년 ~ '21년 상반기

- 글로벌 13개 ESG 평가제도 및 공시표준을 조사하여, 우리기업이 직면한 모든 ESG 진단항 목체계를 설계(영역-범주)
  -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분석
- 도출된 ESG 진단항목 중 13개 평가제도 및 공시표준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 선정 및 산정방식 비교·분석

(산출물)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영역, 범주, 항목, 진단기준)

(2단계) 국내 산업계 ESG 특수성 반영

'21년 상·하반기

- 산업계, 금융계, 연기금, 경제단체, NGO, 학계, 평가기관, 언론사 등과 간담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진행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 고도화 과정을 진행함  
(산출물)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 수정/보완

(3단계) 국내 ESG 관련 법/제도 정합성 검토

'21년 하반기

- 국내 정책·제도와 정합성을 검토하여 K-ESG 기본 진단항목이 정책·제도와 상충되는지 최종 검토함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정책·제도 등의 사항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지표 구성  
(산출물) K-ESG 가이드라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 회계기준위원회, 2021. 12

## 1. 개요

-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외 2개 기준서를 개정함. 이 개정 내용은 '23.1.1.부터 시행될 예정(조기적용 가능)

## 2. 주요 내용

### 가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개정

- (의무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함

### 나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함

### 다 K-IFRS 제1012호'법인세'개정

-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예: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함

##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



**붙임**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포일
①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1. 9. 10.	'23. 1. 1.	'21. 12. 8.
② 제1001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 오류'			
③ 제1012호 '법인세'	'21. 10. 15		

\* 조기적용 가능

**(1)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 (의무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 공시 대상인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임
  -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이 크기(예: 금액)나 성격면에서 중요하고 관련 회계정책 정보 자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다른 중요 정보 이해에 필요)\*하면 해당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해야 함

<관련 회계정책 정보 자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① 보고기간 중에 회계정책 변경
- ② K-IFRS에서 허용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
- ③ 회계정책을 개발
- ④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
- ⑤ 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한 경우

**(2)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K-IFRS 제1008호)**

- (회계추정치의 정의)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를 정의함
  - '회계추정치'란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임
  - 회계추정치 개발에 '측정기법'과 '투입변수'가 사용됨
  -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

**(3) 법인세(K-IFRS 제1012호)**

-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예: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

에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요건③을 추가함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자산이나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 ① 사업결합이 아니고
- ②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③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음 <신설>

- (경과규정)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생긴 거래는 거래를 최초 인식한 날에 개정 내용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이에 대응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
    - 최초 적용 누적 효과는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 회계기준원, 2021. 12

## 1 배경

□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 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하여 옴

\*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말하며,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형태로 나타남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B1 및 B6]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회(Discussion Paper)를 발표( '20.11)\*\*

\* 기준서 제정은 토론회 발표 → 공개초안 발표 → 최종 기준서 확정 순으로 진행

\*\* IFRS Standards Discussion Paper 'Business Combination under Common Control'

○ 토론회에서는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 측정, 이하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

\*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함

➔ IFRS 토론회 발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안내하고자 함

## 2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현황

### 가. 동일지배 사업결합 관련 회계기준 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IFRS를 전면 채택하였으므로 IFRS와 같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음\*

- \* 동일지배 기업 간 사업결합은 IFRS 적용범위에서 제외됨[K-IFRS 제1103호 문단 2(3)]
- 이에 따라 기업(경영진)은 유사한 회계기준,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적용 중이며[K-IFRS 제1008호(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 ①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에 따른 장부금액법과 ②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주로 적용

〈적용 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K-IFRS 제1103호
합병대상 자산·부채의 측정	연결장부금액	공정가치
합병대상회사의 순자산과 지급한 합병대가의 차이	자본잉여금	영업권* 또는 잉가매수차익** * ‘합병대상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 합병대가’의 경우 → 영업권 계상 ** ‘합병대상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 합병대가’의 경우 → 당기이익 계상

## 나. 회계처리 현황

◆ (분석대상) 합병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합병일이 '18.1.1.~'20.12.31.(3년)에 속하는 동일지배기업 간의 합병(226건)

- 최근 3년간('18년~'20년) 226건중 대다수(221건, 97.8%)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극히 일부(5건, 2.2%)만 공정가치법을 적용
  - (합병 당사자별)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4건 중 4건(1.9%), 종속회사 간 합병 12건 중 1건(8.3%)에서 공정가치법 적용

〈합병 당사자별 회계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장부금액법		공정가치법		계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0	(98.1%)	4	(1.9%)	214	(100%)
종속회사 간 합병	11	(91.7%)	1	(8.3%)	12	(100%)
계	221	(97.8%)	5	(2.2%)	226	(100%)

- (연도별)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가치법 적용 건수는 감소 추세\*
  - \* (합병 건수/공정가치법 적용 건수) : '18년(73/3) → '19년(73/2) → '20년(80/0)
  - 공정가치법 적용 비율은 '11~'13년\* 6.8%에서 '18~'20년 2.2%로 감소
  - \* '13.10.4. 보도자료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분석 및 시사점’



## 〈연도별 회계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장부금액법	공정가치법	계	
'18년	70 (95.9%)	3 (4.1%)	73 (100%)	
'19년	71 (97.3%)	2 (2.7%)	73 (100%)	
'20년	80 (100%)	- (-)	80 (100%)	
계	221 (97.8%)	5 (2.2%)	226 (100%)	
'11년~'13.1분기	연평균	31 (93.2%)	2 (6.8%)	33 (100%)
	누계	69 (93.2%)	5 (6.8%)	74 (100%)

## 3 시사점

-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
  - 이는 공정가치법이 일반적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고 재무정보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전·후에 연결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의견제출기한 '21.9.1.)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음
    - \* 일반적 사업결합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특수관계자(동일지배下 기업) 간 거래이므로 거래 설계 우려, 비지배주주 존재 지표만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은 불충분 등
-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
-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
  -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영업권(자산)이나 염가매수차익(이익)이 발생하여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손익 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